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왜 필요한가 ...공영언론 개혁 마지막 과제

정치권 영향력 줄인 진흥회 절실...뉴스통신진흥법 개정논의 시작해야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방송사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4개사는 국가가 지분 전체 또는 다수 지분을 가진 공영언론사다.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법(KBS 관련)을 필두로 나머지 2개 법안이 차례 차례 통과돼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3법은 정치권이 이사 전원을(EBS 제외) 추천하는 관행을 포기하고 40% 수준으로만 추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 추천권을 명시하여 사장에 대한 1차 선발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었으며, 노사동수 편집위원회 구성과 보도 책임자의 임명동의제 시행을 의무화하

면서 제작 자율성을 법조문에 명시했다.

공영언론사 지배구조를 정치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뿐더러,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인 공영언론사 지배권·인사권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이는 방송3사 노조와 시민사회가 지난 10여년 넘게 수차례의 파업과 투쟁으로 쟁취한 쾌거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사회 추천권을 직능단체, 언론사 구성원, 시민사회나 학계, 법조계로 확대한 것이 각 사 노동조합에 유리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추천자들의 정치적인 색깔이 단일하지 않을 뿐더러 보수 색채의 단체들도 추천권을 가질 수 있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구성원들의 추천권

또한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주장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

▲ 연합뉴스만 남았다...법 개정 안된 유일한 공영언론사

정치후견주의를 털어낸 방송3법의 공포로 이제 4개 공영언론사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연합뉴스 밖에 없다.

2012년 3개월만 가까이 월급을 포기하고 총파업 투쟁을 벌인 500여명 가까운 연합뉴스 노동조합 구

2면에 계속



☞ 1면에 이어

성원들이 요구한 것은 ‘공정보도 쟁취’였고 정권이 임명한 사장의 연임 반대와 그의 퇴진이었다.

2012년 봄, 여름을 그렇게 파업투쟁으로 뜨겁게 보냈건만 아직도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2003년 개정된 노동조합 규약으로 만들어진 상설기구 지배구조개선 특위 또한 사장 선임 시기에만 반짝 활동하고 마는 한시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후견주의를 청산하고 공정보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23년간 개정되지 않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이하 진흥법)을 손보는 게 유효한 방법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2025년 가을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연합뉴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력을 잡은 정권이 공영언론사에 대한 지배와 개입을 철회하겠다는 이 시점에 그저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윤석열 정권이 구독료와 공적기능에 대한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폭거로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했다.

구독료와 공적기능 예산보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진흥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은 1999년 ‘통신언론진흥회법’을 입법청원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이 입법청원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자동 폐

기되었고, 2001년 5월 유상증자 방안과 연합뉴스 사법 제정을 두고 전사원의 총의를 모아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 법안’이 그해 9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3년 4월 30일 해당 법안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란 이름의 6년 한시특별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30일부로 시행되었다.

▲ 정치권에 얽매인 ‘뉴스통신진흥법’과 연합뉴스 지분구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역할과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법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이하 진흥법)으로 노무현 정부시절이던 2003년 6년 한시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일반법으로 전환되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언론 통폐합으로 연합통신이 출범하고 1983년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가진 24,5%의 지분 KBS와 MBC에 넘어 가면서 양대 공영방송의 연합 지분이 각각 42,35% 와 32,15%로 변경되었다.

이는 연합통신의 절대적 지배권을 (74,5%) 정부가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통신 시절의 사장선임은 정권이 지명한 인사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심지어 당시 문화공보부

에서 연합 사장을 산하 기관장 임명하듯 낙하산을 태워 보냈다.

이런 지분구조를 가진 ‘관영언론’이 2003년 별도 법을 제정하면서 공영언론사로 변신했는데 이 때 연합뉴스 지분구조가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30.77%, KBS 27.77%, MBC 24.73%로 바뀌면서 진흥회가 최대주주로 바뀐다.

진흥회의 구성은 정부(대통령) 2명, 국회 3명(여·야·국회의장 각 1명 추천), 신문협회·방송협회 각 1명 추천으로 7인 체제이다.

이사장은 정부 추천 인사 중 연장자가 관례적으로 맡아왔다. 정부와 국회가 절대다수인 5명을 추천하는 현 진흥회 이사임명 구조는 정치권에 줄을 대지 않으면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이래 오늘날까지 8명의 사장이 임명되었지만 매번 사장 선임시기 후보자들의 능력을 보기보다 정치권의 낙점을 누가 받았는지 살펴보기 일쑤였다.

진흥회는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경영진 선출과정에서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후견주의를 덜어내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후견주의 타파하기 위한 진흥회 이사 구성은?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의 개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진흥회는 연합뉴스 지분 30.7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공적 기구다.

그러나 실제 이사진 구성을 살펴보면,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이 오히려 언론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순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진흥회 이사 7명은 대통령 추천 2명, 국회 추천 3명(국회의장·여·야 각 1명), 신문협회·방송협회 추천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전체 이사 중 5명이 정치권 추천 인사로 채워지는 셈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이 3명,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4명의 이사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적 기구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진흥회가 연합뉴스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뉴스통신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

한 이사가 선임되기 쉽다.

이 때문에 진흥회 이사진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게 될 우려도 있다.

진흥회가 사실상 연합뉴스 사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문제가 된다.

법령상 재적이사 2/3 이상의 특별다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7명 중 최소 5명의 동의로 족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의중이 관철되기 쉬운 환경이다.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정부여당 이사진에다 이사 1명만 더 동의하면 특정 인물을 사장으로 만들 수 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정부여당 이사의 반대만으로 특정 인물의 사장 선임을 무조건 막을 수 있다.

진흥회 이사장은 법적으로는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을 맡아온 관행도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공영방송사들이 방송 관련 법 개정으로 이를 일부 해소할 방법을 찾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송법 개정 이전에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11명을 임명했는데 관행적으로 여권이 7명, 야

권이 4명을 추천했다. 개정 방송법은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이사의 수를 6명으로 대폭 줄였다. 나머지 9명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학계(2명), 변호사단체(2명)가 추천한다.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도 여당측 6명, 야당측 3명의 구도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국회 추천 이사 5명에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2명, 학계 2명, 변호사단체 2명 등 13명으로 분산돼 정치권 영향력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KBS의 경우 정치권 추천 이사의 수가 40%, MBC의 경우 38% 수준이 됐다. 정치권 추천 인사의 절대적 수는 줄고, 사회 각계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반영된 인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워지며,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로 진흥회 이사진 구성 개편도 정치권 추천 인사의 상대적 비중을 낮추고, 다양한 사회 부문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진흥회 이사진을 구성한다면 공영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장 선임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진흥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합뉴스의 대표이사를 뽑는 것이다.

현행 진흥법도 이를 분명히하고 있다.

일반적인 안건을 의결할 때는 재적 이사 2/3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연합뉴스 사장을 추천할 때는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높아진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고려해 그간 진흥회는 연합뉴스 사장을 추천할 때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운영해왔다.

그러나 현행 진흥법에는 사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사추위 구성은 진흥회 정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나마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추위 구성을 법률에 의한 의무 규정으로 못박거나 국민추천위원회에 복수의 사장후보 선발권을 넘기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개진되는 이유다.

그 외에도 진흥회는 정관 외에 사장 추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사회가 바뀔때마다 그들 입맛

에 맞게 마음대로 변경해 사추위원 추천 주체를 임의로 바꾸거나 사장추천 시민참여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사추위를 그대로 둔다고 해도 기존의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추위 위원으로 진흥회 이사 3명이 참여해온 관행을 재고해야 한다. 사실상 사장을 선임하는 진흥회 이사들이 사추위 이사로도 활동한다면 자칫 공정한 사장 선출을 위한 사추위의 역할을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추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2018년과 2021년 연합뉴스 사장 선임 시 시민참여단 의견이 사추위에 반영됐다. 2021년 시민참여단은 전국에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선발한 일반 시민 82명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2024년 구성된 7기 진흥회는 사추위는 구성했으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시민참여단은 꾸리지 않았다.

관련해 2025년 8월 공포된 방송법이 의무화한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 국민위원회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균형잡힌 위원 선정으로 정치적 편향성이나 지역편향을 배제하고 성평등원칙을 지키면서 후보자들의 화려한 경력과 외면보다 능력과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할 의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 방송3법 개정안 vs 뉴스통신진흥법 비교표

구분	방송3법 개정안 (KBS·MBC·EBS)	뉴스통신진흥법 (연합뉴스)	비교
이사수 확대	KBS 11명→15명 MBC 9명→13명 EBS 9명→13명 (정치권 추천 비율 약 40%로 축소)	진흥회 이사 7명 (국회 3, 대통령 2, 신문·방송협회 2)	방송은 정치권 영향 축소 연합뉴스는 정권 종속적
사장 선임	국민추천위원회(100명 이상 시민) 복수 후보 추천 →이사회 선출	사추위 복수 후보 추천 → 진흥회 이사회 의결, 국민 참여 규정 없음	방송은 시민 참여형 연합뉴스는 정치권 의존형
추천 주체	국회, 시청자위원회, 현직 구성원, 학계, 교육계 등 다양한 주체	국회·대통령·신문협회· 방송협회 중심	방송은 다원적 추천 구조 연합뉴스는 정치권 다수 추천
편집권 독립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	편집위원회 설치 '가능'만 규정, 노사 동수·강제성 없음	방송은 강행규정+처벌조항, 연합뉴스는 임의 규정
재정 구조	수신료·광고·정부지원 (법률 직접 규율)	정부와 2년 단위 구독계약, 위탁업무 예산 보전	정부와 2년 단위 구독계약, 위탁업무 예산 보전